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20-58호

「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」 일부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24일

대전광역시의회의장

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6·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,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확대·지원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함(안 제4조).

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

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회장(참조: 복지환경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·주소·전화번호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)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복지환경전문위원실

(전화 042-270-5066, FAX 042-270-5039, E-mail : airplane1000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5만원”을 “7만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2021년 1월부터 지원한다.

신 · 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참전명예수당) ① (생 략)</p> <p>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참전 유공자 월 <u>5만원</u>,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월 3만 원 으로 한다.</p> <p>③ ~ ④ (생 략)</p>	<p>제4조(참전명예수당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7만원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
비 용 추 계 서

1. 의안명 :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

2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비용 발생 요인 : 2021년 1월부터 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2만원 인상할 경우 추가비용 발생
- 관련조문 : 조례안 제4조, 부칙 제2조

3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대상자
 -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6·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용사로 국가보훈처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
 - ※ 참전유공자 수 : 6,722명 (2020년 3월 말 기준)

나. 추계 결과

- 2021년 : 5,646백만원 (6,722명×7만원×12개월)
- 2022년 이후 : 참전유공자 감소 추세를 고려, 매년 예산 3.5% 감액
- ※ ('18년) 7,666명 → ('19년) 7,233명(433명 감소)→ ('20년) 6,722명(511명 감소)

다. 연도별 비용추계표(별첨)

라. 재원조달방안 : 지방비 지원

4.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- 특이사항 없음

5. 작성자 : 복지정책과 행정7급 이경준

연도별 비용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계	
세 입	5,646,480	5,448,853	5,258,143	5,074,108	4,896,514	26,324,098	
지 방 세	5,646,480	5,448,853	5,258,143	5,074,108	4,896,514	26,324,098	
세 출	5,646,480	5,448,853	5,258,143	5,074,108	4,896,514	26,324,098	
참전명예수당							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5,646,480	5,448,853	5,258,143	5,074,108	4,896,514	26,324,098
	지방세	5,646,480	5,448,853	5,258,143	5,074,108	4,896,514	26,324,098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관 계 법 령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0. 3. 24.] [법률 제17119호, 2020. 3. 24., 일부개정]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
2.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
3.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
4. 6·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

제6조(참전명예수당) ① 국가보훈처장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"수당지급 대상자"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
2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
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

②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 다만,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지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

급한다.

③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④ 참전명예수당은 수당지급 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[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(이하 "체신관서"라 한다) 또는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의 계좌를 말한다. 이하 같다]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 다만, 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수당지급 대상자가 본인 명의로 참전명예수당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참전명예수당을 입금하여야 한다.

⑥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8조를 준용한다.

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(月額)으로 지급하며,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